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 검토보고서

2024. 4. 15.(월)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4. 4. 2.
- 회부일 : 2024. 4. 3. (의안번호 : 24-39)

## 2. 제안이유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 반영 및 사용 용어를 변경하고, 실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제안자 구체화를 통한 용어 정비(안 제1조~제4조)
-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15조)
- 제안등급의 일관성 도모(안 제23조)
- 맞춤법에 따른 정비(안 제27조)
- 마일리지 부여 관련 별표 추가 및 삭제(안 별표 제3조)
- 별지서식 추가(안 별지 제1조서식)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입법예고 : 2024. 2. 29. ~ 3. 20.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을 반영 및 사용 용어를 변경하고, 실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포구민 이외의 마포구와 관련 있거나 관심이 높은 타지자체 주민들까지 의견수렴에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제안의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공무원 제안접수, 구민 제안접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효성 높은 제안접수가 이루어져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마포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